서 울 시 립 대 학

교무 [illegible]-1643 244.5301 1984. 3. [illegible].

수신 [illegible] 참조

제목 국.공립대학 교원 인사관리지침 통보

1. 대학 200-1331(84.8.3)에 관련입니다.

2. 법무 100.1-39(82.2.12) 문고예규 정비시행에 따른 대학고유 인사에 관한 제반 지침을 통합 조정하여 문교부에서 시달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요약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공립대학 교원 인사관리지침(요약)1부. 끝.

계	서무계장	경리계장	서무체장	서무과장	학 장	
						월 일

서 울 시 립 대 학 장

수신처: 6각학과장, 각실과장.

국·공립대학 교원 인사관리 지침

1. 임용요건

가. 신규임용

(1) 임용시기: 수시

(2) 임용직명별 경력년수 -(대학졸업자 기준 연구 및 교육소요경력)

교수 14, 부교수 9, 조교수 5, 전임강사 3.

(3) 신규임용원칙

(가) 상위직임용제한 - 박사학위 소지자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교원·전문대학교·연구경력 이외의 일반적종등의 경력만으로도 조교수 이상의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나) 퇴직고원의 신규임용 - 퇴직전 직명에서 승진 소요년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전의 직명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다) 공개채용 및 사전협의 - 고원의 신규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 채용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되, 조교수 이상의 임용은 문교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승진임용

(1) 승진시기(년2회) 4월 1일.10월 1일.

(2) 직명별 승진소요년수

° 부교수 - 교 수: 5년

° 조교수 - 부교수: 4년

° 전임강사- 조교수: 2년

단, 고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동직명별 승진소요연수 이상의 기준을 설정 운영가능

(3) 승진임용의 경우, 직명별 인원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승진 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타대학의 동일 직명이상의 재직년수를 합산,인정할 수 있다. (시립대학 경력은 임용조건에 한함)

다. 재임용

(1) 재임용시기(년2회) 3월 1일, 9월 1일

(2) 직명별 임용시기

○ 교수.부교수 6년	○ 조교수 3년
○ 전임강사 2년	○ 조교 1년

(3) 재임용 대상자는 개인별로 총.학장 책임하에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평정표"의 평점으로 엄정히 심사하여 재임용한다.

2. 연구실적 심사기준

가. 연구실적물의 범위

(1)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써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하며 일간지 및 교내 간문에 발표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저서(출판된것에 한함)

○ 학회지 ○ 논문집 ○ 정기간행물

○ 예능계에 있어서는 연구,발표,전시,입선등을 포함한다.

(3)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

나. 연구실적물의 인정

(1)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예.체능계는 총.학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기관의 확인서등 관계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3) 학술연구조성비 지급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보고서

(4) 전문대학 교재편찬위원회에서 집필된 교재

(5) 공동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 1인연구 또는 편찬 :100%

° 2인공동연구 또는 편찬: 70%

°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

°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

° 석사학위 취득논문: 100%

° 박사학위 취득논문: 200%

단, 석사 및 박사학위(취득자) 논문을 2인(지도교수포함)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도 학위취득자 단독논문으로 인정한다.

(6) 예.체능계 실기(연구,발표,전시,입선등)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고스란히 인정 심사준칙 제5조 제3항 "별표2"에 의하되, 평점 1점을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

다. 연구실적물 심사

(1) 연구실적은 해당전공분야의 3인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중 1인 이상은 타교에 위촉함을 원칙으로한다. (석.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생략)

(2) 연구실적 심사평정은 각편이 평균 "우"이상이어야 한다.

라. 연구실적 인정기간 및 편수

(1) 신규임용: 최근 4년이내 200%이상 제출

다만, 전임강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연구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으나 임용후 1년 이내에 연구실적을 발표.제출하여야 한다.

(2) 승진임용: 승진소요기간 이내 200%이상 제출

(3) 전,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임용된 자가 조교수로 승진되기 위하여는 유예된 연구실적을 먼저 충족하여야 한다.

(4)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은 인정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그 인정은 1회에 한한다.

(5) 수산, 해양계 대학졸업자 (중략)

(6) 공과계대학(공업고육대학, 공업고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고수자격 인정을 위하여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 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임용일 기준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학 교원으로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전임강사 임용: 연구실적이 없어도 가함.

(나) 조교수 임용: 최근 3년이내의 논문 10편로 가함
단, 법령상 복무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

(7) 국·공립대학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대학교의 분장포함) 및 국·공립대학교의 부속시설과 연구기관의 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국·공립대학 교원으로 신규임용하거나, 국·공립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직명으로 다시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3. 본 지침은 '84, 9. 1부터 시행한다.